

|     |                          |
|-----|--------------------------|
| 접 수 | 의안과 -<br>(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학급담임제도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건의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5년 1월 26일

청 원 인

성 명 : 박재영 외 10인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     |      |     |     |     |     | 의 장 |
|-----|------|-----|-----|-----|-----|-----|
| 담당자 | 청원담당 | 과 장 | 국 장 | 차 장 | 총 장 |     |
|     |      |     |     |     |     |     |

## 청원소개의견서

|   |                          |
|---|--------------------------|
| 청원인   | 주소 :                     |
|   | 성명 : 박재영 외 10인           |
| 건명  | 학급담임제도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 소개년월일   | 2015년 1월 26일             |
| <p>소개의견</p> <p>본 청원인 ‘노정민 외 10인’은 제 17회 임시회의 &amp; 청소년국회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입니다. 2015년 1월 임시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학급담임제도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p> <p>『전국 고등학교 교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2,336개 고등학교의 교사 135,298명 중 기간제 교사가 19,067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정교사는 116,231명으로 8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고등학교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58,774명으로 전체 교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제 교사는 12%(7,004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10명 중 4명이 담임 교사를 맡고 있고 동시에 담임 업무를 맡는 정규교사가 45%(51,770명)에 불과한 것입니다.</p> <p>이에, 정교사가 ‘乙’ 신분인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방지, 정교사를 담임에 우선 배치를 의무화, 담임의 행정업무를 감소, 정규교원 정원을 확보해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원임용 기회를 확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p> <p>본 청원인이 요청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p> <p>*현행 ‘초, 중등 교육법 제 3장 제 2절’의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은 내용에 찬성하면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원이 제안한 청원을 소개합니다.</p> |                          |

소 개 의 원

인

# 청원서

## 1. 제안이유

『전국 고등학교 교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2,336개 고등학교의 교사 135,298명 중 기간제 교사가 19,067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정교사는 116,231명으로 8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고등학교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58,774명으로 전체 교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제 교사는 12%(7004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10명 중 4명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고 동시에 정규교사의 55%가 담임을 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업 외 학교생활을 관리해주고, 학생이 학교 내에서 가장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교사는 담임교사입니다. 그런데 담임 교사를 기간제 교사가 맡게 된다면 학교에 머무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정해진 업무만 처리하는 것과 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학생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교권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교사가 '乙' 신분인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방지, 정교사를 담임에 우선 배치를 의무화, 담임의 행정업무를 감소, 정규교원 정원을 확보해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원임용 기회를 확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 3장 제 2절'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2. 주요골자

| 현행   | 개정문  |
|--|--|
| 제2절 교직원 <개정 2012.3.21.><br><br>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br><br>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절 교직원 <개정 2012.3.21.><br><br>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br><br>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p>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p> <p>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직원 등 직원을 둔다.</p> <p>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p> <p>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전문개정 2012.3.21.]</p> <p>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p> <p>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3.21.]</p> | <p>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p> <p>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직원 등 직원을 둔다.</p> <p>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p> <p>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u>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교육부에서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lt;개정 2013.3.23.&gt;</p> <p>[전문개정 2012.3.21.]</p> <p>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p> <p>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제19조의3(학급담임교사의 배치) ① 각 학급의 담임교사는 정담임과 부담임으로 구성한다.</u></p> <p><u>② 정, 부담임교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교사가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p> <p><u>③ 학교에 배치된 정규교사의 정원이 부족한 경우, 비정규교사는 부담임으로만 배치될 수 있다.</u></p> <p>[전문개정 2012.3.21.]</p> |
|--|---|

청원인 성명 : 박재영 외 10인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